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추가(안 제12조 제3항제5의5 신설)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할수 있는 수행사무 추가 (안 제13조제5의2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업무 위탁규정 마련 등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(안 제12조제3항제5의5 신설)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에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외국인 등록번호)를 수집·이용 등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(안 제13조제5의2 신설)

나. 제·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①· ② (생략)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. 1. ~ 5의4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(생략) ④·⑤ (생략)	제1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5의4. (현행과 같음) <u>5의5.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의 수행</u> 6. (현행과 같음) 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1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중소기업부장관(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	제1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 -----

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6. (생략)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5의2.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

6. (현행과 같음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소기업·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